

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(학력미인정) 운영 지원

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(학력미인정)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활성화

예산총괄 (단위 : 천원)

2014예산 (A)	2015예산 (B)	증감 (B-A)	$(B-A)*100/A$
-	70,000	70,000	

사업설명 (단위 : 천원)

사업목적

-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(학력미인정)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한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기반 확대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

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평생교육법 제16조, 제31조,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'15. 3~12월
- 지원규모 : 시 교육청 등록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(학력미인정) 10개교
- 지원내용 :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강사료, 학습비 등 운영비
- '15년도 소요예산 : 70,000천원

2015년도 예산 (단위 : 천원)

구분	2013결산	2014예산(A)	2015예산(B)	증감(B-A)
계			70,000	70,000
민간경상사업보조	-	-	70,000	70,000
○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(학력미인정) 운영비 지원	-	-	70,000	70,000

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

- 민간경상사업보조 : 70,000천원
-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(학력미인정) 운영비 지원 : 70,000,000원 = 70,000천원
- ※ '15년 시 교육청 등록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수에 따라 차등지원

사업추진 절차

- 집행절차
 - 기본계획 수립(시) → 지원신청서 접수 및 선정(기관→자치구→시) → 보조금 교부(시→자치구→기관) → 보조금 집행(기관) → 정산·보고(기관→자치구→시)

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

- 추진방향
 - 서울지역 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육청, 자치구와 협의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
 -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한 교육소외계층 시민력 향상을 통한 평생학습 강화
- 추진일정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계		70,000	
지원계획 수립	'15. 3월		
운영비 지원	'15. 4월~12월	70,000	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학력미인정) 운영비 지원
사업운영 평가 및 정산	'15. 12월		

실·본부·국	부서명	담당자			
평생교육정책관	평생교육담당관	평생교육지원팀장	이경숙 (2133-3973)	주무관	이재원 (2133-3974)

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계획서는 홈페이지(<http://opengov.seoul.go.kr/sanction>)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.